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62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이상희 · 엄태영 · 곽규택
고동진 · 서천호 · 박준태
최은석 · 김성원 · 최수진
김태규 · 박수영 · 박성훈
조승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근무지 지정을 담당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의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과도하게 긴 의무복무기간이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여 취약지의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에 대하여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 수련 인력이 해당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경우 복무 기간 단축 특례를 적용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대해서는 공중보건 의사가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직접 지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의 지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이 한다”를 “이 하되, 제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종사명령을 한 공중보건 의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 중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를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받은 공중보건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근무지역·기관 또는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

제1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 중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필수 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련기간 중 1년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 의사의 종사명령 및 의무복무기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중보건 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2항제5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종사명령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5조(종사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서 「섬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기관 또는 시설을 직접 지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근무할 지역·기관 또는 시설의 지정은 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 -----.
⑤ (생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근무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내 또는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변경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② (생략)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① -

-----.

-----이 하되, 제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종사명령을 한 공중보건의사는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신분 상실 및 박탈)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박탈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 4. (생략)

<신 설>

제12조(공중보건역사의 수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련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1.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2. ~ 4. (현행과 같음)

5.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
공의 수련기간을 의무복무기
간에 산입받은 공중보건의사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
은 근무지역·기관 또는 시설
을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임의
로 변경하여 근무한 경우

제12조(공중보건역사의 수련) ①
(현행과 같음)

(2) -----

----- .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배치된 공중보건
의사 중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필수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공의 수련 과
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련기간 중 1년

③ (생략)	<u>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 무기간에 산입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